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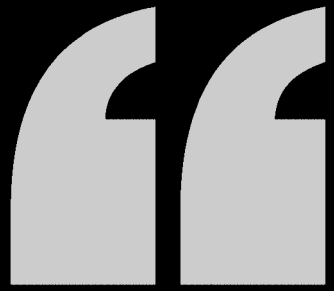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자료

_긴급조치 1, 4, 7, 9호 전문

_선언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정 1974.1.8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부칙 <제1호, 1974.1.8>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제정 1974.4.3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선동·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문교부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4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비상군법회의의 검찰관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호, 1974.4.3>

-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제정 1975.4.8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 심판한다.

부칙 <제7호, 1975.4.8>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정 1975.5.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참여행위
 -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뇌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9호, 1975.5.13)

1.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1975.4.11. 서울대 김상진 양심선언문

양심 선언문

더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짙게 덮힌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던 말인가!

대학은 휴강의 노예가 되고 교수들은 정부의 대변자가 되어 가고 어미닭을 잃은 병아리 마냥 우리들은 반응없는 울부짖음만 토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그릇답이 아닐진대, 우리의 주장이 결코 비양심이 아닐진대, 우리는 어떻게 더이상 자존을 짓밟히며 불명예스런 삶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어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흘뿌려 이 땅에 영원히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자기 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학우여! 이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제를 통탄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굳은 신념으로 이 처참한 일당 독재의 아성을 향해 불퇴전의 결의로 진격하자. 민족사의 새 날은 밝아오고 있다. 그 누가 이 날의 공포와 혼란에 노략질당하길 바라겠는가. 우리 대한 학도는 민족과 역사 앞에 분연히 선언한다. 현 정권이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이 민족을 못살게 군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열한 피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한 길이고 이것의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의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노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서울대 농대 축산과 4년 김상진

1975.5.22. 서울대 김상진 장례식 시위 조사

조사

동지여
 그토록 어렵게 그토록 숨막하게 죽음으로 그대는 사랑을 완성했다. 척박한 이 터전을 불다 붉은 한 점 피로써 그대는 사랑 하는 법을 가르치고, 드디어는 그대 동학년(東學年) 꿈나무에서 비롯된 민중사의 현 단계를 혼신의 힘으로 뛰어넘었다. 그렇다 동지여 너의 죽음은 형편없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려한 소식이 되었다. 우리에게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워